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73호 2022. 8. 17.(수)

거창 부흥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 2022-90호 거창군 관리계획(소로2-293호)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
거창군 고시 제 2022-93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174호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6
거창군 공고 제2022-1176호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설치 행정 예고 ····· 14
거창군 공고 제2022-1178호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16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2-30호 2023년 체육행사 개최지원 공고 ····· 18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 - 90호

거창군 관리계획(소로2-293호)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93	8~10	국지 도로	182	거창가지 1312-10	거창가지 1323-31	일반 도로	-	거창군고시 제2020-130호 ('2020.11.26.)	
변경	소로	2	293	8~13	국지 도로	182	거창가지 1312-10	거창가지 1323-31	일반 도로	-		경미한 변경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293	소로 2-293	• 도로 변경 - B=8~10m → 8~13m, - L=182m (변경없음)	• 가지2지구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사항을 반영한 경미한 선형변경

2. 거창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시설: 도로	군계획시설(소로2-293호선)사업	거창	가지	소로	2	293	182	당초 8.0~10.0 변경 8.0~13.0	중로1-16 ~ 거창읍 가지리 1323-51	거창군 고시 제2020-130호 ('20.11.26.)	2021.09.16 ~ 2023.09.30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무궁화신탁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포스코 P&S타워)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 예정일 : 2021. 9. 16.

○ 준공 예정일 : 2023. 9. 3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4. 관계 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932	2,105					
1	거창읍 가지리	1313-2	전	3	3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12-13	전	69	69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12-11	전	143	14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4	거창읍 가지리	1718-1	구	69	69		국 (농림수산부)			
5	거창읍 가지리	산109-14	임	25	2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6	거창읍 가지리	1323-52	전	40	40		거창군			
7	거창읍 가지리	1323-26	전	86	86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3, 아진캐슬(504호)	㈜금호주택			
8	거창읍 가지리	1323-48	전	238	23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9	거창읍 가지리	산109-17	임	57	5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0	거창읍 가지리	1323-57	전	39	39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아림로23, 아진캐슬5층(504호)	한성기업 주식회사			
11	거창읍 가지리	산109-16	임	297	29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2	거창읍 가지리	산109-15	임	7	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3	거창읍 가지리	1323-46	전	8	8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3, 아진캐슬(504호)	㈜금호주택			
14	거창읍 가지리	1323-47	전	148	14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5	거창읍 가지리	산314-1	도	18	18		국 (농림수산부)			
16	거창읍 가지리	산109-18	임	310	31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7	거창읍 가지리	산105-28	임	12	1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8	거창읍 가지리	1323-45	전	7	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19	거창읍 가지리	산105-30	임	340	34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22층	㈜ 무궁화신탁			
20	거창읍 가지리	1323-51	임	105	105		거창군			
21	거창읍 가지리	1312-4	전	240	56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23, 아진캐슬(504호)	㈜금호주택			
22	거창읍 가지리	1312-10	전	270	25		거창군			
23	거창읍 가지리	1313-1	전	401	3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22 - 9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7.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보광길 38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노혜1길 97-2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1174호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7.

거 창 군 수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거창군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

2)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마.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거창군(안전총괄과, ☏ 055-940-379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1) 우　　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2) 팩　　스 : 055-940-3629

3) 이 메 일 : asdf157@korea.kr

※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1]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한 사업체를 거창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우수업체 인증 포상

2.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4. 제7조에 따른 강조기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우수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거창군 공고 제2022-1176호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 업 명 : 거창군 무인교통단속장비(도산마을 앞) 구매설치
○ 설치규모 :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 1식
○ 설치위치 :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52-2번지 일원(가조TG ↔ 석강농공단지)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8월 17일 ~ 2022년 9월 7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거창군 무인교통단속장비(도산마을 앞) 구매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52-2번지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2-1178호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거창읍 불법주정차 차량 방지를 위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7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

○ 사 업 명 :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매·설치

○ 설치규모 :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1식

○ 설치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2)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8월 17일 ~ 2022년 9월 7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 E-mail : beom0509@korea.kr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매·설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780-3)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거창군 거창읍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2-30호

2023년 체육행사 개최지원 공고

2023년 체육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체육행사 개최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체육행사 개최지원

2. 지원대상

- 거창군체육회 또는 거창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 및 전국 산하 체육단체 등 기관·단체 에서 유치·개최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3. 지원 세부사업

- 전국규모 엘리트 스포츠대회 개최지원
- 동·하계 스토브리그(전지훈련) 개최지원
-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행사 개최지원
- 군 단위 자체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 개최지원

4. 신청자격

가. 거창군에서 전국규모나 지역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 등을 유치·개최하는 거창군체육회, 거창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산하단체 및 전국 산

하 체육단체 등 체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원제외 단체 또는 사업

< 공모절차 제외>(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도 단위 이상 및 군 단위 자체체육대회는 2회 이내 제한)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거창군이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2022년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사업비 정산시 부당집행, 서

류 미비 등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그 밖에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대회규모, 참가인원, 대회기간 등에 따라 연간지원 (예산 범위내)**

○ 지원명목 : 전국규모 엘리트 스포츠대회, 동·하계 스토브리그(전지훈련),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행사, 군 단위 자체 생활체육대회, 자전거 투어 창포원 소풍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관련 제반법령 충족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2. 8. 18. ~ 2021. 9. 8.(22일간)**

○ 제출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다. 단체 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1부

라. 거창군체육회 등 상위단체 가입증 1부

※ 법인 또는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사본으로 갈음

※ 제출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게재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체육시설사업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문 의 처 : 체육시설사업소 스포츠마케팅담당 ☎ 055-940-8762
거창군체육회 ☎ 055-940-3927

7.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1단계 : 자체심의(서류심사 - 대상사업 및 적격여부 등)

○ 2단계 :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결과통보 : 개별통보(2023. 1. ~ 3월 중)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대회 개최 전 개별 교부신청서 등 제출

○ 대회 개최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2022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포기로 반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정산검사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시 당초 사업계획서상 기입된 자부담 부담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입금내역, 지출증명 영수증 등)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 그 밖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름

※ 공모신청서 접수 전에 거창군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최종 제출